

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  
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  
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징수기일)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전에  
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.

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  
수할 수 있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도  
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(별표 1)

보수교육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징수 기준

교육 과정	대상인원	수강료 징수 한도 금액	비 고
초등학교 교사과정	80명까지	3,190원	1인 1시간당 금액
	120명까지	2,840원	
	160명까지	2,640원	
	200명까지	2,550원	
	240명까지	2,460원	
	280명까지	2,420원	
	320명까지	2,370원	
320명초과	2,350원		

※ 1인당 수강료 징수금액 : 교육시간×시간  
당 징수금액(대  
상인원에 해당  
하는 시간당 징  
수금액의 범위  
내에서 교육감  
이 정한 금액)